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1나603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1나6038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8 선고 2020가단5311124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김남훈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2022. 5. 3.

판결 선고2022. 5. 24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8. 선고 2020가단531112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/6 지분에 관하여 2017. 1. 1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3,793,278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,793,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- 제2쪽 제7행의 '연 18%로 계산한'을 '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'으로 고침
- 제3쪽 제19행의 'C의 사실혼 배우자인'을 'C의 동생 H의 사실혼 배우자인'으로 고침
- 제4쪽 제5행의 '원고가'를 '피고가'로 고침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조성필

판사이관형

판사이상아

별지